



가정통신문 2021-79호	2021학년도 1학기 지필평가 안내	담당 교육기획부 문해훈 580-3011
12417 경기도 가평군 읍 광장로 10	☎ 580-3000(교무실)	http://gapyong.ms.kr

안녕하십니까?

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교육에 힘써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, 1학기 지필평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.

지필평가는 현재 등교 수준(2/3 등교)을 유지하여 2, 3학년 학년간 이동하여 실시합니다.

(1학년은 자유학년제로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수행평가에 의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입력됨)

특히, **코로나19 의심 증상(발열, 두통, 인후통, 기침, 오한 등)을 보이는 학생은 지필 평가에 응시할 수 없으며**, 동거인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 통보 시점부터 해당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동거인과 격리되면 응시 가능하오니 이 점에 유의하시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담임선생님과 의논하신 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1학기 지필평가 일정

- 일시: 6월 28일(월) ~ 6월 30일(수)
- 장소: 본교 2, 3학년 교실(분반시험)
- 대상: 2학년, 3학년 (1학년은 3교시 정규수업 진행)

2. 1학기 지필평가 시간표

	6/28(월)		6/29(화)		6/30(수)	
	2학년	3학년	2학년	3학년	2학년	3학년
1교시 (09:25~10:10)	자기주도 학습	사회	자기주도학습		자기주도학습	
2교시 (10:30~11:15)	역사		기술가정		과학	
3교시 (11:35~12:20)	수학		영어		국어	
12:20~	중식 및 종례		중식 및 종례		중식 및 종례	

3. 지필평가 미응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(가평중 학업성적관리규정 17조)

가. 코로나19 확진이거나 의심증상 학생 및 등교중지 학생

$$\text{결시생의 인정점} = \text{수행평가취득점수} \times \frac{\text{해당 교과 지필 평균}}{\text{해당 교과 수행 평균}}$$

나. 일반질병으로 인한 결시 학생 :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의 80% 부여

다.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결시 학생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인정점 부여

라.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

→ 학생은 등교하여 평가 응시(2020학년도 응시 불가에서 변경)

2020. 06. 18.

가 평 중 학 교 장

【참고:등교중지 대상 학생】

대상	등교 중지 기간	출결증빙 자료
확진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원치료통지서* *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을 시행규칙 [별지 제 22호 서식]
격리 통지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격리통지서
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*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거인의 격리통지서
	<p><유의사항></p> <p>- 다만,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, 학생은 등교 가능</p>	
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	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문자 통지 사본 등)
<p>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(임상 증상 발현 학생)</p> <p>※ 임상증상 발현 시 '유·초·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(제3판)'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·문의(해당 지침 5, 9, 40페이지 참고)</p>	<p>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(호전) 시까지</p> <p>※ 참고사항</p> <p>▶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(방역지침 40쪽 참고)</p>	<p>[코로나19 검사 결과 '음성'인 경우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(발급 가능 시), 문자 통지 사본 등) <p>[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, 학부모의견서 등 ※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발급 가능 시 권장) ※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(예: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, 진료확인서,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) ☞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

※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하며,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